■ 저작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0호의3서식] <신설 2026. 10. 29.>

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90일

신청인명 (법인 또는 단체명)			법인(사업자) 등록번호	
대표자명			생년월일	
단체 연락처	전화번호		팩스번호	
	주소			
직전 허가(재허가를 포함합니다) 연월일				

「저작권법」 제105조의2제2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「저작권법」 제105조의2제3항제3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심사	→	결재	→	허가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(문화체육관광부)						